#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4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은 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20일(火),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2일(木)

## 4. 관련법령

○ 주택법(2012.7.27. 시행 법률 제11243호)제43조 제8항

## 5.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 완화는 물론 각종 불행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를 구현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 대상 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사업신설 (제4조제1항제2호 타목 신설)

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단서 내용 추가 (제10조제1항제5호)

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금 지원기준 내용 추가 신설 (제10조제3항 별표 1 나목 중 추가 신설)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5.9.26.「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당시에 마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성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살까지 선택하는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도등·통행로등 및 옥외 보안등을 점등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자살 등 불행한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조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공동 전기료 부담이 어려워 조도개선을 반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지난 10월 8일에 마포경찰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개선과 자살방지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마포구의회에서도 제17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매우 궁핍한 생활때문에 공동주택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자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 전기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0년 10월「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자치구별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여,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8개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 우리 구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공동 전기료 시행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것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되는 불미스런 사건 발생 예방과 자살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도록 한 공동 수도료에 대한 대책과 일부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등 주민들의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규

## 주 택 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3호(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추진,2010.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경로당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